

2015년도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환자) 중심의 R&D로 전환 및 국민적 책임성 제고, 보건의료 R&D 연구(기술)성과의 산업화 촉진

비전 「국민건강 G7 선진국 도약」 “2020 건강수명 75세 시대” 달성

목표

- ① 정부 R&D 중 건강 R&D 투자 비중 확대
- ② R&D 기술 수준 : ('11) 72.6% → ('17) 75%
- ③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 제약 산업 : ('11) 0.4% → ('20) 3.8%
 - 의료기기 산업 : ('13) 1.2% → ('20) 3.8%

기본방향(HEALTH)

① 건강수명 연장	① Healing 주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② 신성장동력 창출	② Economy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 확대
③ 국민행복 실현	③ Alert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④ better life 건강증진(Well-being)/돌봄(Care) 기술 투자 확대
④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조성	⑤ IoTgetter 산·학·연·병원 선순환 체계 구축

5대 추진전략

1	(투자) 보건의료 R&D 투자 비중 확대
2	(사업화) 보건의료 R&D 기술사업화 촉진
3	(성과관리)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혁신
4	(관리프로세스) 보건의료 R&D 전문기관 관리프로세스 일원화로 투명성·전문성 제고
5	(인프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I. 지원내용

□ 신규과제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6,000백만원

□ 대상사업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보건의료 T2B (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 질환유효성평가센터사업('10~'14) 종료 후, 신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의 특화 질환 유효성평가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의 고도화 - 글로벌 수준의 질적 관리 ▪ 고난이도 유효성평가 중심의 서비스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연구자의 Unmet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일반 CRO에서의 한계가 있는 질환 특이적인 유효성평가 서비스 등 ▪ 연간 15억원 지원예정(연간 15억원 이내, 5년(3+2) 이내 지원) * 단, 1차년도는 연구비 10억 이내, 연구기간 8개월 이내 지원

※ 지원경쟁률,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II.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신청 자격

□ 주관 및 공동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임면권자(총장, 대표이사 등)가 발행한 '임용확약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기관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을 통한 전자접수
 - 연구개발 정보(과제구성, 연구내용, 참여연구원, 연구비 등) 전산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한글파일, *.hwp) 작성 및 전산 업로드
 -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서식 > 2015년도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전산 입력한 연구개발 정보와 업로드 한 연구개발계획서의 합본 파일(*.pdf)을 출력하여 제본
 - ※ 스프링 제본 금지
 -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혹은 날인) 및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된 제본용 연구개발계획서 10부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전자인증(공인인증서)을 통한 최종 접수완료
 - ※ 전자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공문 필수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기한엄수 요망)

프로그램명	전산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전자인증)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15. 6. 19(금), 12:00	'15. 6. 23.(화), 18:00

※ 전산입력 마감 후 수정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기한 이후 도착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송함

- 제본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주소 및 연락처

< 제출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약개발지원팀
전화 : 043-713-8678, 팩스 : 043-713-8910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 모두 가능

IV. 법령 및 규정

□ 신규과제 지원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령 참조

V.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15. 5. 2주 ~ 6. 4주) → 사전검토('15. 7. 1주) → 과제평가단 평가('15. 7. 2~3주) → 예비선정공고(선정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포함)('15. 7. 4주) → 신규 지원과제 확정('15. 7. 5주)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15. 8. 1.)

□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15. 8. 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15. 6. 19(금))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참여 및 신청제한에 대한 사전선별을 실시하므로 주관 및 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는 탈락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실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장비사전검토항목’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출(예비선정 시 별도 안내)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외)
 - ※ 참여기업부담금이 포함되어 1억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 구축비용 중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임

-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장비도입 심사 대상(변경)일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향후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
 - 계속과제 중 차기년도 정부출연금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매년 6~7월 예정)
- ※ 심의에 해당하는 장비가 심의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장비를 구축할 수 없음
-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 장비사전검토항목 및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의 양식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첨부서류 참조

□ 참여기업부담금

-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호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 경우에는 70% 이내

○ 정부 지원연구비가 과제접수 시 신청한 금액보다 삭감 되더라도 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참여기업부담금은 삭감할 수 없음

VI. 문의처

□ 신규과제 지원 관련 문의

○ 업무별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정선미 (신약개발지원팀)	043-713-8678 smjung12@khidi.or.kr
전산입력	배영신 (연구성과정보팀)	043-713-8238 sin7382@khidi.or.kr
	김창민 (연구성과정보팀)	043-713-8297 bulpae@khidi.or.kr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고객지원 > 참여공간 > 질의응답 메뉴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